의 안 번 호	제 호	의결사항
의 결 연 월 일	2015. . . (제 회)	

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정보화지원과장
제출 연월일	2015. . .

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침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 『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』개정사항으로, 개인정보보호법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임

3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 제9조(사전협의) 삭제

나. 제15조제1항 단서 중 “해당부서”를 “해당 부서”로 한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개인정보보호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

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15. 11. 20. ~ 2015. 12. 9.)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

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1항 단서 중 “해당부서”를 “해당 부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사전협의)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② 다른 법령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5조(관제의 범위)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하고,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를 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15조(관제의 범위) ① ----------. ----- 해당 부서 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정보화지원과	
연 락 처	02-901-7263